

학기제현장실습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 제3항, 학칙시행세칙 제29조2항 및 현장실습운영규정 제4조 1항에 의거 학생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기제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기제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재학 중 현장실습기관에서 15주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2.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① 성적처리는 Pass/Non Pass로 하며 반영학기는 해당학기 전공 및 교양 필수교과 포함 최대 20학점을 부여한다.

- ② 수업 1/4선 이전에 현장실습 포기 시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③ 수업 1/4선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성적을 Non Pass로 표기하며, 재학 중 현장실습을 재수강 할 수 없다.

제4조(이수제한) 현장실습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격 및 대상자 선발) ① 현장실습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 학점 취득 후 졸업에 이상이 없으며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을 통과한 자
2. 졸업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예정자 포함)
3. 졸업년도 2학기에 가능하며 학기시작 3주전에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자

② 학과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장이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기관 선정) ① 학과는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후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며 현장실습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현장실습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산업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전공분야 등이 현장실습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 하다고 학과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산업체

제7조(신청과 철회) ① 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제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현장실습을 이수중인 학생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실습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습 과정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기제현장실습 변경신청서를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타 현장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을 수행 중인 학생이 사고와 질병 또는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기제현장실습 취소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현장실습 과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철회 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8조(현장방문 지도) ① 현장실습 참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해당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도교수를 선임한다.

② 현장방문지도는 수업일수 3/4 이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지도 후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 현장실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평가점수는 100점으로 하며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을 Pass 학점인정한다.
2.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학점으로 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3.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현장실습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0조(학생의 의무) 현장실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종료 후 성적평가 1주일 전까지 성적평가에 필요한 현장실습 제반 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2.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현장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실습 기간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과에 알려야 한다.
5.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평가하여 학점인정을 불허하거나 현장실습을 취소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을 한 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교육과정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정보유출 등)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